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26호 2021. 7. 15. (목)

【조 레】

- | | | |
|-----------------|-----------------------------------|----|
| ○ 고창군 조례 제2555호 |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 ○ 고창군 조례 제2556호 |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 ○ 고창군 조례 제2557호 |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 ○ 고창군 조례 제2558호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 ○ 고창군 조례 제2559호 | 고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 ○ 고창군 조례 제2560호 |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 64 |
| ○ 고창군 조례 제2561호 |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66 |
| ○ 고창군 조례 제2562호 |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 ○ 고창군 조례 제2563호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
| ○ 고창군 조례 제2564호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 82 |

회 람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 예산담당관 ☎ 063-560-2326)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177호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126
- 고창군 규칙 제1178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2
- 고창군 규칙 제1179호 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40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1-1208호 소하천 등 정비(점용, 사용) 허가 공고 261
- 고창군 공고 제2021-1222호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63
- 고창군 공고 제2021-1240호 제37회 고창군민의 장 수상후보자 선발 요강 265
- 고창군 공고 제2021-1241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발 요강 270
- 고창군 공고 제2021-1243호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 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주민의견 청취 공고 274
- 고창군 공고 제2021-1251호 고창군 하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공고 285

【회 보】

- 2021 종합민원과 신축신고-188 (2021.7.12.) (신림면 김봉관)도로지정 293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55 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개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69조제8항 중 “배포일”을 “배포일(위원회 심의 7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열람”을 “열람 또는 사본”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나목 중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의 제2호마목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를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위락시설(공원·녹지)”를 “위락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제2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를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위락시설(공원·녹지)”를 “위락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의 제2호다목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를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위락시설(공원·녹지)”를 “위락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의 제2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를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위락시설(공원·녹지)”를 “위락시설[공원·녹지]로,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8의 제2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약영장 시설

별표 20의 제2호나목 중 “녀목”을 “녀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마목 중 “200m”를 “300m”로 하고 같은 호 아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3)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은 제외) 상부”를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 및 창고¹⁵⁾ 제외) 상부”로 하고,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농지이용시설은 제외)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 중인 농지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삭제한다.

같은표 같은 호 자목 중 “우량농지”를 “우량농지 및 중점경관관리구역¹⁶⁾”으로 하고, “단,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농지 이용시설¹²⁾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허가 목적대로 사용 중인 시설에 한함)”을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농지 이용시설¹²⁾ 및 창고¹⁵⁾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며

주)의 2) 중 “특정 시설물 부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를 “이격 대상 지역 지적 경계(주택의 경우 외벽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 14) 중 “나목”을 “나목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육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참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참고(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신고 등이 완료된 참고 및 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
- 16)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입법예고일 이전 사용승인 또는 최초 건축허가 되어 2021. 12. 31.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충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충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군계획시설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관련)

1. 영 [별표7]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겸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경 및 군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관련)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 제8호 관련)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
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
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
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관련)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관련)

1. 영 [별표11]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별표 18] <개정 2019. 2. 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만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조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음·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태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태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과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관련)

1. 영 [별표21]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너목(동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내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점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6] <개정 2020. 7. 15.>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특정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¹⁾의 이격거리²⁾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 나. 주요도로⁵⁾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 다. 농어촌도로⁶⁾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 라.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 마. 주거밀집지역⁸⁾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 바. 유네스코, 지질공원⁹⁾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500m
- 사. 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닷가)으로부터 1,000m
- 아. 위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이격거리²⁾ 이내의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삭제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3)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¹⁰⁾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 및 창고¹³⁾ 세외) 상부
에 판매용 발전시설¹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²⁾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 자. 우량농지 및 중점경관관리구역¹⁰⁾ 내에 발전시설¹¹⁾(자가소비용은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사용승인일
로부터 3년이 정과한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 및 창고¹³⁾ 세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 폐차장¹⁰⁾ 및 고물상¹¹⁾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 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 다.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500m
- 라. 주거밀집지역⁸⁾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 마. 우량농지⁸⁾ 내에는 폐차장 및 고물상을 설치할 수 없다.

3. 공장¹³⁾ 및 자원순환관련시설¹⁴⁾ 이격거리²⁾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0m
- 나.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0m
- 다. 주거밀집지역⁸⁾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0m
- 라. 우량농지⁸⁾ 내에는 공장¹³⁾ 및 자원순환관련시설¹⁴⁾을 설치할 수 없다.

주)

1)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선

- 비의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반전시설 중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를 말한다.
- 2) 이격거리 :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이격 대상 지역 지적 경계(주택의 경우 외벽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 3) 주거밀집지역 :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한다.
- 4) 공원, 문화재, 관광지 :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의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의 관광지 또는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의 관광단지를 말한다.
- 5) 주요 도로 :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중 준공된 도로를 말한다.
- 6) 농어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의 도로(농도의 경우는 제외) 중 준공된 폭 5m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7) 공공시설 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 학교, 「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 8)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
- 9) 유네스코, 지질공원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의한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중 해식지역, 「자연공원법」 및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권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시된 고창군 지질명소를 말한다.
- 10)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나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 11) 고물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 12) 농지이용시설 :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2호의 시설 중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임소·산양 제외)을 사육하는 축사를 제외한 동·식물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13) 공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각 목의 산업단지 구역 밖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분류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분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업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폐비닐·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 등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 14)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중 나목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육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한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 15) 창고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신고 등이 완료된 창고 및 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
- 16)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구조문대비표

제7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① (생략)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
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범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별장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관련)

1. (생 략)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
숙박시설로서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제7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열람 또
는 사본 _____ . _____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1. _____

 -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학점하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관련)

<p><u>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u></p> <p>다. ~ 바. (생 략)</p> <p>[별표 7]</p> <p>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p>가. ~ 라. (생 략)</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p>	<p>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p> <p>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다. ~ 바. (현행과 같음)</p> <p>[별표 7]</p> <p>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p> <p>-----</p> <p>-----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p> <p>-----</p> <p>-----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바. -----</p> <p>----- 위락시설[공원·녹지 -----]</p> <p>-----</p> <p>-----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p>
--	---

<p><u>축하는 것은 제외한다)</u></p> <p>사. · 아. (생 략)</p> <p>[별표 8]</p> <p>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8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 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 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 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u>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u></p> <p>사. · 아. (현행과 같음)</p> <p>[별표 8]</p> <p>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8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p> <p>가. -----</p> <p>-----</p> <p>----- 생활숙박시설[공원 · 녹지 -----</p> <p>----- 주거 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 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 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나. -----</p> <p>----- 위락시설[공원 · 녹 지 -----</p> <p>-----</p> <p>-----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p>
--	--

다. (생 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관련)

1. (생 략)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 아.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생활숙박시설[공원 · 녹지] -----

-----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

----- 위락시설[공원 · 녹지] -----

-----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관련)

1. (생 략)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 라. (생 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

-----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

----- 위락시설[공원·녹지] -----

-----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p>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p>가. ~ 너. (생 략)</p> <p><u><신 설></u></p> <p>[별표 20]</p> <p>농립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가. (생 략)</p> <p>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아목, 자목, <u>너목</u>, 더 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 파. (생 략)</p> <p>[별표 26]</p> <p>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시설¹⁾의 이격거리²⁾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p>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p> <p>가. ~ 너. (현행과 같음)</p> <p><u>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야영장 시설</u></p> <p>[별표 20]</p> <p>농립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p> <p>----- <u>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u></p> <p>-----</p> <p>다. ~ 파. (현행과 같음)</p> <p>[별표 26]</p> <p>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p>-----.</p>
--	--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은 제외)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 중인 농지이용시설¹²⁾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거리²⁾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량농지 내에 발전시설¹¹⁾(자가소비용은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¹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농지이용시설¹²⁾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허가 목적대로 사용 중인 시설에 한함)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2. (생 략)

3. 공장¹³⁾ 및 자원순환관련시설¹⁴⁾ 이격거리²⁾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 <단서 삭제>

자. 우량농지 및 중점경관관리구역¹⁶⁾ -----
-----.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농지이용시설¹²⁾ 및 참고¹⁵⁾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2. (현행과 같음)

3. -----
-----.

<p>가. ~ 다. (생 략) 라. 우량농지⁸⁾ 내에는 공장¹ 3) 및 자원순환관련시설¹⁴⁾ 을 설치할 수 없다.</p> <p>주) 1) (생 략) 2) 이격거리 :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u>특정 시설물 부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u> 3) · 4) (생 략) 5) ~ 13) (생 략) 14)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중 <u>나목</u>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p> <p><신 설></p>	<p>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주) 1) (현행과 같음) 2) ----- ----- <u>이격 대상 지역 지적 경계(주택의 경우 외벽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u> 3) · 4) (현행과 같음) 5) ~ 13) (현행과 같음) 14) ----- ----- ----- <u>나목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육 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u> 15) 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참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참고(개별법에 따라 영업허</p>
---	---

<u><신 설></u>	<p><u>가 · 등록 · 신고 등이 완 료된 창고 및 정부관리양 곡창고 제외)</u></p> <p><u>16) 중점경관관리구역 :</u> <u>「경관법」 제7조에 따라</u> <u>수립한 “고창군 경관계 획”과 관련 「경관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u> <u>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u></p>
--------------------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56 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③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제26조의2 관련)

시설명	사용대상
1. 고창읍성	○ 고창군 읍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관람료
2. 고인돌 박물관	○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입장료
3.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수영장 1일 사용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6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p> <p>③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은 별표와 같다.</p>

<신 설>

【별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제26조의2관련)

시설명	사용대상
1. 고창읍성	○ 고창군 읍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관람료
2. 고인돌 마을관	○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입장료
3.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수영장 1일 사용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57 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의 제목 “군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을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④ 법인(구분 및 세액)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제8조 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 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 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1. 개인	<삭제>
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나. 국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삭제>
구 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법 제85조 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 100억 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초과 50억 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초과 50억 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이하 30억 원을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초과 30억 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u>재산분</u>	제2절 <u>사업소분</u>
<p>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u>재산분</u>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p> <p>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u>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u>으로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세율) ① ----- ----- <u>사업소분</u>----- -----.</p> <p>② ----- ----- ----- 1제곱미 터당 500원-----.</p> <p>③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u>5만원</u></p> <p>④ 법인(구분 및 세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p>제8조(신고의무) ① <u>재산분</u>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신고의무) ① <u>사업소분</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58 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국장, 과장”을 “문화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반수가 되어야”를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52조제2항 및 법 제92조”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조사결과”를 “조사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비능률적”을 “비효율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군수는 법 제10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로, “취득 처분”을 “취득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20조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여하는”을 “대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6항”을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에”를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을 “직접”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개신기간은 개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23조,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의 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 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창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다른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 개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대부(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이전지방에 따른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관한특별법」 제46조제1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대상”을 “감경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31조제5항제1호,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전단 중 “감면”을 각각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6. 고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의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천단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감경”을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감면”을 각각 “감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협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5. 고창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100분의 50”을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5”를 “8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0”을 “5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4항에 따라 대부(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농공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을 “군이 조성”으로 한다.

제39조제3호 전단 중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관내 1,000m² 이하로 공동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를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사·종합회관”을 “청사·종합회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사”를 “군·읍면 청사”로 한다.

제56조제2호 중 “지키기”를 “운영하기”로 한다.

제57조 전단 중 “등재관리”를 “등재 및 관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서식”을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군수에게”를 “지적소관청 또는 소관부서에”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를 “군수는 그 소관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당연직위원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장, 과장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문화복지 환경국장, 건설도시과장, 재무과장-----.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삭 제>
④ 당연직위원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복지환경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삭 제>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뜨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 ----- ----- 과반수 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

<p>1. ~ 4. (생 략) <u>⑥</u> · <u>⑦</u> (생 략)</p> <p>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u>영 제52조제2항 및 법 제92조에</u>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1. 20]</p> <p>제7조(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u>조사결과</u>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u>비능률적인</u>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법 제10조</u> 및 영 제7조에 따른 <u>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u>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의</p>	<p>1. ~ 4. (현행과 같음) <u>④</u> · <u>⑤</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p> <p>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u>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u>----- ----- ----- ----- ----- -----</p> <p>제7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조사결과에</u> 따라 ----- ----- ----- ----- -----.</p> <p>제8조(재산의 집단화) ----- ----- <u>비효율적</u>----- ----- -----.</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군수는 법 제10조</u> ----- <u>공유재산 관리계획을</u> ----- -----</p>
--	---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 (3) (생 략)

제17조의2(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생 략)

(2)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관리관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취득 및 처분

---. -----

----- 때에는 -----

-----,

(2)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현행과 같음)

(2)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

-----,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대신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p>(생 략)</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관리위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u>대여하는</u>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u>군수</u>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u>지방자치단체에서</u> 직접 시행한다.</p> <p>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한 경우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위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p>	<p>(현행과 같음)</p> <p>② ----- ----- ----- ----- 대여하여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 ----- 필요하다 고 -----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도 ----- -- 직접 ----- -</p> <p>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 ----- ----- -----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
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
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
진법」을 준용한다.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32조제3항-----

-----.

제26조(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
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
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
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
창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생
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다른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에
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
른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
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p><u>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u></p> <p><u>(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u> <u>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 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u> <u>3.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대부(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u>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u>	<삭 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제1항-----

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생 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생 략)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광물의 매각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 한다.

② 삭제

③ (생 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

----- 감정평가법인등이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인등---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p>(생 략)</p> <p>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u>건축법</u>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삭 제</p> <p>④ · ⑤ (생 략)</p> <p>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삭 제</p> <p>② 「공공이전지방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영제7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p>	<p>(현행과 같음)</p> <p>② ----- ----- -----. -----.</p> <p>「건축법」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p> <p>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p>
---	--

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정한다)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대부분이 등을 8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분이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 조제6항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3.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

----- 감경 -----.

④ -----
--- 감경대상-----

-----.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 조제7항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1. -----

----- 감경 -----

2. -----

----- 감경-----.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 축산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는 사용료를 30페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 감경 -----.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
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
는 경우에는 50페센트를 감경
할 수 있다.

<신 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
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
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
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50페
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6. 고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감경 할 수 있다.

1. 고창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2.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페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_____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 _____

2. _____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
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

<p><u><신 설></u></p> <p>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p> <p>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p> <p>5. 고창군의 귀족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 ----- ----- -----.</p>
--	---

<p>1. ~ 3. (생 략)</p> <p>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u>지방자치 단체의 장이</u> 인정하는 재산</p> <p>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u>고창군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 대부: <u>100분의 50</u></p> <p>2. 생산, 연구시설, 주거시설 대부: <u>100분의 45</u></p> <p>3. 그 밖의 경우: <u>100분의 40</u></p> <p>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군수가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고창군 재무회계 규칙</u>」 -----.</p> <p>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 -----. 1. ----- 전 부 2. ----- 80 3. ----- 50</p> <p>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p>
---	--

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신 설>

<삭제>

<삭제>

<삭제>

④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4항에 따라 대부(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
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불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균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6. ~ 8. (생 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분 기간(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분할납부하게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4. (현행과 같음)

5. 正方 ——————
—————
—————
—————

6. ~ 8. (현행과 같음)

9.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 4.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1. _____
--- 군이 조성---

2.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고창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
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_____

1. • 2. (현행과 같음)

3. 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관내 1,000m² 이하로 공동소

적이 관내 1,000m' 이하 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에 따른 면적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 제9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 등-----

-----.

1. ~ 7. (현행과 같음)

② -----
군·읍면 청사-----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사용료의 면제) -----

-----.

1. (현행과 같음)

2. ----- 운영하기 -----

3. (생 략)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생 략)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생 략)

(2) ~ (4) (생 략)

제64조(합병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군수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3. (현행과 같음)

제57조(비품의 관리) -----

- 등재 및 관리-----,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

----- 정한 서식-----.

(2) (현행과 같음)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64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

----- 지적
소관청 또는 소관부서에 -----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

-----.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법인등-----.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59 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구 분	<u>지 급 금 액</u>
수 당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u>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u>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명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u>(신설)</u>	제3조(임명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② (생략) ③ (생략) 「별표 1」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별표 1」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수 당</td> <td>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td> </tr> <tr> <td>여 비</td> <td>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근수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 분	액 수	수 당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근수 상당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 급 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수 당</td> <td>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td> </tr> <tr> <td>여 비</td> <td>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근수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급 금 액	수 당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근수 상당액
구 분	액 수												
수 당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근수 상당액												
구 분	지 급 금 액												
수 당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근수 상당액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60 호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는 사람의 자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고등학교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학교 학생 수와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생의 선발횟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30만원 이내
2. 중 학 생: 50만원 이내
3.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 선발 확정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군수 또는 고창군장학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환수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61 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창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62 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민·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을 “중장기적 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경비의 균형적인 지원을 심의하기”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민·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9명”을 “13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풍부한 자 2명”을 “풍부한 사람과 학부모 등 6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지원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적 교육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고창군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관교육발전심의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p>② · 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 2. (생 략)</p> <p>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명</p> <p>4.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u>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② (생 략)</u></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교육지원팀장</u>이 된다.</p> <p><u>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u></p> <p>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p> <p>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p> <p>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p> <p>4. 그 밖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p>	<p><u>한다.</u></p> <p>②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풍 부한 사람과 학부모 등 6명</p> <p>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u></p> <p>③ ----- ----- 교육 지원 업무담당팀장----- -----.</p> <p><u>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u></p> <p>1.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p> <p>2. 중장기적 교육발전 및 교육 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의 군수가 고창군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p>
--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63 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에 규 제48호”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후조리비”란 출산후 산모의 신체,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를 “바우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후조리비는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신생아 1명을 출산한 산모

에게는 50만원, 다태아인 경우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한다.

제5조의 제목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을 “(출산장려금 등 지원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등”으로, “출산장려금지원”을 “출산장려금 등 지원”으로, “출산 “서비스””를 “출산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를 “출산장려금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을 “출산장려금 등을”로, “지원대장”을 “지원대장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 및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1. 출산장려금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일 출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월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단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기준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첫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대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셋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디沙发上자녀 이상(이름 :)							
	※ 세 자녀 이상부터는 2회 분할지원(계속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1년 후 지급)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지원 (출생일 : , 이름 :) * 물품수령은 보건소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 : , 이름 :) * 수령은 보건소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디자녀 육아용품 지원 (출생일 : , 이름 :) * 셋째아 이상만 해당(사회복지과)									
	<input type="checkbox"/> 디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용가 명 : , 수용가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굽워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결감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결감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결감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국가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살병 [] 아동국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국민행복카드 진정	[] BC카드 ([]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기 광 [] 대구 국민 신한 신협 세무 부산 [] 수협 하나은행 신청 가능	[] KB국민 [] 롯데 [] 삼성 [] 신한	카드	카드		카드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히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개자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개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4] 351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업률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금이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별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의사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밭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신급여(출신에 따른 해신급여 지급에 한함 ※ 사신에 따른 해신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선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선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겸감과 다자녀 전기료 겸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첫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겸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선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신급여 대상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해신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급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체계 개악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당급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 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8.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입력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혜택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갑면히 해임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원 1회 결감요금을 청산하여 환급함

9. 양수수당 : 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주자 이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모부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신침인(대리 신침인)

(서민 또는 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청탁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산림 도시기자회원, 단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산림, 도시기자회원, 단방공사 등

[별지 제6호서식]

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대장

(단위 : 천 원)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 ⑦

(생 략)

<신 설>

제4조(지원내용) ①·②(생략)

③ 산모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 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경우 파견비용을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7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 ⑦^(현행과 같음)

⑧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내용) ①·②(현행과
같음)

④ 산후조리비는 고창군 지역화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보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와 제2항 각 호의 경우
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
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된 사실이 확인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폐로 지원하며, 신생아 1명을 출산한 산모에게는 50만원, 다태아인 경우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신청)
①) 출산장려금 등-----

② 출산장려금 등

1. ~ 5. (여행과 같음)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지원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확인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

③ 출산장려금 등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산장려금 등 -----

-----,

③ ----- 출산장려금
은 -----

-----.

제8조(환수조치) ① -----
----- 출산장려금
등 -----
-----.

② ----- 출산장려금 등을 -----
----- 지원대장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장-----

<p>을 기록하여 한다.</p> <p><u>제9조(산모 및 신생아 등록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 략) ② 보건소장은 신고 된 임산부 와 이 조례에 따라 <u>출산장려금</u> 을 지원받은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p><u>제10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 및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u></p>	<p>-----.</p> <p><u>제9조(산모 및 신생아 등록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p>----- <u>출산장려금 등</u>-----</p> <p>-----</p> <p>-----</p> <p>-----.</p> <p><u>제10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 및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비치·관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출산장려금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u> 2. <u>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u> 3. <u>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u>
---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564 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고창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급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체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신념을 합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우리는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우리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8. 우리는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접검 후 고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 할 수 있다.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히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3(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고창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4(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업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고창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고창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업권고를 거부

② 이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부터 제89조 및 「고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

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고창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창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겹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돋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하며,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제1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자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겹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8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자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

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④ 의장과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자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자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멀실·부폐·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멀실·부폐·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되며,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고창군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추천 위원이 없거나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모집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⑥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9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34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실비변상)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급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정계기준(제7조의4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input type="radio"/>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input type="radio"/>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input type="radio"/> 각종 비위 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 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input type="radio"/>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input type="radio"/>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input type="radio"/> 탈세 <input type="radio"/> 변탈 <input type="radio"/>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주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input type="radio"/> 영리거래금지 위반 <input type="radio"/> 주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자연, 변경신고 해태 등 <input type="radio"/> 주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혀위신고 - 미신고, 혀위신고 <input type="radio"/> 계약체결 제한 위반 <input type="radio"/> 관리인 침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겹직신고 위반	<input type="radio"/> 겹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자연, 변경신고 해태 등 <input type="radio"/> 겹직 혀위신고 - 미신고, 혀위신고 <input type="radio"/> 겹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겹직금지	<input type="radio"/>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input type="radio"/>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7. 회피의무	<input type="radio"/>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input type="radio"/>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input type="radio"/>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들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요,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1	겹침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고창군의회의원 겹침(변경)신고서				
성명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개		원		
주소		전화번호		

「자방자차법」 제35조제3항 및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겹침(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 (인)

고창군의회 의장 귀하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7의2제2항 관련)

고창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 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원

(인)

고창군의회 의장 귀하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삽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제4항 관련)**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5호 서식] (제9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	-----	--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신고자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성명		
금품등을	직업(소속)	연락처
제공한자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8호 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인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시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참 가 자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9호 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출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성명	직위	정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목적				
활동개요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四

大清人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문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0호서식] (제18조제2항)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직위 (직급)	성명 직위 (직급)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표자	
요청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체			
장 소			
일 시	20__._._ ~ 20__._._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시례금	총액 <u>천원</u> (<u>*</u> 1회 평균 대가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u>천원</u> 별도) (<u>*</u>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유의사항		(서명 또는 인)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성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1호 서식] (제18조제5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외부강의등 유형	성명 직위 (직급)	소속위원회 연락처
활동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대표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20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방법 :	반환금액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제18조제6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의회 의원 문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선거구분	비례대표	
명칭					
영리행위 현황	직위			영리행위 기간	
	보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고사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	--------------------------------

거래 상대방	성명 신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신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신고자와의 관계
직무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대상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거래 금액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5호 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 번 호) 연락처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연락처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증거자료 목록 비고	※ 증거자료 첨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OOO장	신고자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6호 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신고자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설명		
신고취지 및 이유		
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7호 서식] (제24조제5항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8호 서식] (제24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9호 서식] (제24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